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71

제출년월일 : 2021년 5월 17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기구 신설을 통해 제38대 서울시정 핵심과제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기관 소관 사무를 조정하여 조직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은 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성과지표 달성도, 행정수요의 지속성, 기능수행의 효율성 등에 대한 성과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존속기간 연장·삭제 또는 자율신설기구 폐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3조의2).

나. 주택정책 총괄기능 강화를 위해 ‘주택건축본부’를 확대·재편하여 ‘주택정책실’ 신설(안 제16조).

다. 지역발전 기능 일원화 및 권역별 강남·북 특화·균형발전 추진을 위해 ‘균형발전본부’ 신설(안 제18조 및 제21조).

라. 시민참여, 민관협력, 사회혁신 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시민협력국’ 신설(안 제14조의2).

마. 창업지원체계 재구조화 및 금융·투자 지원을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 등을 위해 ‘경제정책실’ 기능 강화(안 제6조).

바. 도시물류 인프라 확충을 통한 서울형 생활물류네트워크체계 구축을 위해 ‘도시교통실’ 기능 강화(안 제8조).

사. 자율신설기구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시민협력국’으로 재편하고 경제일자리기획관, 복지기획관, 시민협력국의 존속기한을 2023년 7월24일까지로 규정함(부칙 제7270호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 제112조

2)「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21. 5. 7. ~ 5. 11.)결과: 의견제출 2건

- 부서명칭 변경, 부서단위 조직 신설에 대한 의견(반영)
- 공공건축물 설계 등 일부 업무 소관부서 조정에 대한 의견은 개정안대로 유지함이 적합(미반영)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자율신설기구의 성과평가)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 실·본부·국(이하 “자율신설기구”라 한다)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이하 이 조에서는 “성과평가”라 한다)는 성과지표 달성도, 행정수요 지속성, 기능수행 효율성 등을 평가항목으로 하여 실시한다.

③ 성과평가를 위해 각 자율신설기구는 평가 관련 자료를 조직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존속기간의 연장·삭제 또는 자율신설기구의 폐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성과평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도시재생실, 도시계획국, 주택건축본부”를 “주택정책실, 도시계획국, 균형발전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복지기획관”을 “복지기획관을, 시민협력국”으로 한다.

제5조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창업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도시형제조업 및 패션·봉제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6. 도시농업 활성화 및 도시·농촌 간 상생·협력, 농수산물 유통·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7. 산업입지 수급계획 및 마곡단지·G밸리 등 산업기반 조성·활성화에 관한 사항
8. 바이오 의료산업 및 AI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9. 금융산업 육성 및 외국인 투자 유치에 관한 사항
10. 디지털미디어시티(DMC) 활성화 및 영상·애니메이션 등 콘텐츠산업에 관한 사항

제8조제4호 중 “화물 등 물류행정”을 “자동차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물류단지 조성, 물류시설 확보, 물류배송 지원에 관한 사항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시민협력국) 시민협력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민민주주의·시민행복증진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시민참여·숙의 예산제 운영 및 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공동체 운영 및 계획에 관한 사항

4. 사회협력 증진 및 사회혁신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관협치 정책 및 계획, 갈등관리 계획 및 갈등조정에 관한 사항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주택정책실) 주택정책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택정책 수립·운용 및 저소득층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2. 주택정책 개발·연구, 주택동향 및 주택관련 통계자료 수집·분석에 관한 사항
3. 신규 주택제도 도입·운영과 가로주택정비사업계획의 수립·조정·시행에 관한 사항
4. 역세권청년주택·사회주택·공동체주택 등 주택공급에 관한 사항
5. 건축정책 수립과 건축허가 등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
6. 공공택지개발, 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
7. 공동주택 관리 및 공동주택 재건축에 관한 사항
8. 정비사업 및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에 관한 사항
9.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10. 소규모 건축물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공공건축 및 공간환경사업에 관한 사항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본부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 균형발전 계획 수립·조정·시행에 관한 사항
2. 도시재생정책의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
3. 도시환경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
4.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5. 전통시장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6. 주거재생정책의 수립·조정·시행, 주거환경 정비에 관한 사항
7.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수립·조정·시행에 관한 사항
8. 역사문화도시 관리 및 도심활성화에 관한 사항
9.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사업 등에 관한 사항
10. 창동·상계 지역 등 동북권 일대 개발 등에 관한 사항
11. 수색역세권 등 서남·서북권 일대 개발 등에 관한 사항
12.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진흥에 관한 사항

제21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5장제3절(제128조부터 제130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장제4절 제131조부터 제133조까지를 제5장제3절 제128조부터 제130조까지로 한다.

조례 제6859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지역발전본부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문화시설추진단의”를 “문화시설추진단의”로 한다.

조례 제7270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제128조의 서울민주주의위원회”, “2021년 7월 24일”을 각각 “시민협력국”, “2023년 7월 24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2(자율신설기구의 성과평가)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 실·본부·국(이하 “자율신설기구”라 한다)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이하 이 조에서는 “성과평가”라 한다)는 성과지표 달성도, 행정수요 지속성, 기능수행 효율성 등을 평가항목으로 하여 실시한다. ③ 성과평가를 위해 각 자율신설기구는 평가 관련 자료를 조직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존속기간의 연장·삭제 또는 자율신설기구의 폐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성과평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실·본부·국의 설치) ① (생략)	제4조(실·본부·국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서울특별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제정책실, 복지정책실, 도시교통실, 문화본부, 기후환경본부, 행정국, 재무국, 평생교육국, 관광체육국, 시민건강국, 안전총괄실, 도시재생실, 도시계획국, 주택건축본부,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을 둔다.	② ---------- 주택정책실, 도시계획국, 균형발전본부----------.
③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따라 경제정책실장 밑에 경제일자리기획관을, 복지정책실장 밑에 복지기획관을 둔다.	③ ---------- 복지기획관을, 시민협력국----------.
제5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5조(기획조정실)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국제교류 협력, 국제회의에 관한 사항	<삭 제>
11. 우수정책 해외교류 전략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제6조(경제정책실) 경제정책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6조(경제정책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창업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신 설>	4. 도시형제조업 및 패션·봉제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3. 창업정책 수립·지원, 외국인 투자유치 및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삭 제>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5. 도시농업 활성화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삭 제>
6. 서울과 타 지역 간 경제 및 일자리 분야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6. 도시농업 활성화 및 도시·농촌 간 상생·협력, 농수산물 유통·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7. 산업거점 조성·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산업입지 수급계획 및 마곡단지·G밸리 등 산업기반 조성·활성화에 관한 사항
<신 설>	8. 바이오 의료산업 및 AI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신 설>	9. 금융산업 육성 및 외국인 투자 유치에 관한 사항

<신 설>	10. 디지털미디어시티(DMC) 활성화 및 영상·애니메이션 등 콘텐츠산업에 관한 사항
제8조(도시교통실) 도시교통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8조(도시교통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택시 운송사업, 화물 등 물류 행정에 관한 사항	4. ---------- 자동차 관리----------
<신 설>	5. 물류단지 조성, 물류시설 확보, 물류배송 지원에 관한 사항
5. ~ 10. (생 략)	6. ~ 11. (현행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
<신 설>	제14조의2(시민협력국) 시민협력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민민주주의·시민행복증진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시민참여·숙의 예산제 운영 및 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공동체 운영 및 계획에 관한 사항 4. 사회협력 증진 및 사회혁신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관협치 정책 및 계획, 갈등관리 계획 및 갈등조정에 관한 사항

제16조(도시재생실) 도시재생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재생정책의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 2. 도시환경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 3.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5. 역사문화도시 관리 및 도심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주거재생정책의 수립·조정·시행, 주거환경 정비에 관한 사항 7.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계획의 수립·조정·시행에 관한 사항 8.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진흥에 관한 사항	제16조(주택정책실) 주택정책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택정책 수립·운용 및 저소득층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2. 주택정책 개발·연구, 주택동향 및 주택관련 통계자료 수집·분석에 관한 사항 3. 신규 주택제도 도입·운영과 가로주택정비사업계획의 수립·조정·시행에 관한 사항 4. 역세권청년주택·사회주택·공동체주택 등 주택공급에 관한 사항 5. 건축정책 수립과 건축허가 등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 6. 공공택지개발, 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 7. 공동주택 관리 및 공동주택 재건축에 관한 사항 8. 정비사업 및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에 관한 사항 9.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10. 소규모 건축물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공공건축 및 공간환경사업에 관한 사항

제18조(주택건축본부) 주택건축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택정책의 개발·수립·운용 및 저소득층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2. 역세권청년주택·사회주택·공동체주택 등 주택공급에 관한 사항 3. 건축정책 수립과 건축허가 등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 4. 소규모 건축물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공공택지개발, 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 관리 및 공동주택 재건축에 관한 사항 7. 정비사업 및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에 관한 사항 8.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제18조(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본부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 균형발전 계획 수립·조정·시행에 관한 사항 2. 도시재생정책의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 3. 도시환경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 4.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5. 전통시장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6. 주거재생정책의 수립·조정·시행, 주거환경 정비에 관한 사항 7.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수립·조정·시행에 관한 사항 8. 역사문화도시 관리 및 도심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사업 등에 관한 사항 10. 창동·상계 지역 등 동북권 일대 개발 등에 관한 사항 11. 수색역세권 등 서남·서북권 일대 개발 등에 관한 사항 12.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진흥에 관한 사항
제21조(한시기구) ① 권역별 개발	제21조(한시기구) <삭 제>

사업에 관한 사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지역발전본부를 두며, 지역발전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사업 등에 관한 사항 2. 창동상계 지역 등 동북4구 권역 개발 등에 관한 사항 3. 마곡지구 조성 및 투자기업 유치·산업단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수색역세권 등 서북권 개발 등에 관한 사항	
② (생 략)	①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생 략)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제3절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삭 제>
제128조(설치) 법 제116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및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장 소속하에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삭 제>
제129조(위원장) 서울민주주의위	<삭 제>

원회에 위원장(이하 “서울민주주의위원장”이라 한다)을 두며, 서울민주주의위원장은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0조(소관사무) 서울민주주의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시민민주주의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시민참여·숙의 예산제 운영 및 계획에 관한 사항 3. 민관협치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4. 마을공동체 운영 및 계획에 관한 사항 5. 서울민주주의위원회 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6.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예산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삭 제>
제4절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제3절 (현행과 같음)
제131조(설치) ① 법 제116조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자치	제128조(설치) ① ~ ③(현행과 같음)

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자치경찰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둔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다.	
제132조(소관사무) 자치경찰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 3.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4.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 5. 경찰법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 6. 경찰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제129조(소관사무) 자치경찰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 17. (현행과 같음)

서울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 및 결과 통보

7.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

8.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

9.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10.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

11.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사고 및 현안의 점검

1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13.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조정

14. 경찰법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에 관한 사무

15. 국가경찰사무·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

16.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조정 요청

17. 그 밖에 시장, 서울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제133조(사무국) ① 경찰법 제27조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0조(사무국) ① ~ ③(현행과 같음)
부칙 <제6859호, 2018. 5. 3.>	부칙 <제6859호, 2018. 5. 3.>
제1조 (시행일) (생략)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21조제1항의 지역발전본부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문화시설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2년 8월 18일까지로 한다.	제1조 (시행일) (현행과 같음)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21조제1항의 문화시설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2년 8월 18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7270호, 2019. 7. 18.>	부칙 <제7270호, 2019. 7. 18.>

제1조 (시행일) (생략) 제2조(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 제4조의 경제일자리기획관, 복지기획관, 제128조의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1년 7월 24일까지로 한다.	제1조 (시행일) (현행과 같음) 제2조(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 제4조의 경제일자리기획관, 복지기획관, 시민협력국의 존속기한은 2023년 7월 24일까지로 한다.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미 첨 부 사 유 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의 개정 내용 일부는 행정기구 신설에 관한 것으로 정원 증원에 따른 추가 인건비가 발생하며,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어 있으므로 별도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함.

4. 작성자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김철묵(02-2133-6732)